

P2P 대출 해외 동향 및 제도 현황

한국금융연구원 중소기업금융연구실
이규복

목 차

I. P2P 대출 개요

II. 해외 P2P 대출 동향

III. 해외 P2P 대출 구조 및 제도

IV. 결론 및 시사점

I. P2P 대출 개요

▪ P2P 대출은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차입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영업형태

▪ P2P 대출의 대표적인 영업형태는 Conduit platform, Pricing platform, Discretionary platform 등이 존재(FCA CP18/20 참조)

- Conduit platform: P2P업체가 실사 및 신용정보심사 이후 차입신청자의 정보를 플랫폼에 게재하면 투자자들이 선택하는데 이자율 등 차입조건을 차입자와 투자자가 직접 협의하여 결정하고 P2P업체는 이에 따라 관리하는 구조
- Pricing platform: Conduit platform과 유사하나 이자율 등 차입조건을 P2P업체가 설정하고 투자자는 정해진 차입조건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 Discretionary platform: P2P업체가 이자율 등 차입조건을 설정하고 대출포트폴리오에 대한 타겟 수익률을 제시한 후 투자자가 설정한 리스크 허용기준에 따라 투자일임업과 유사하게 투자자의 투자금을 자동으로 포트폴리오에 배분하여 투자하는 구조

P2P 대출의 특징

▪ 플랫폼 영업 특성상 전통적인 대출취급기관에 비해 설립 및 운영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절감된 비용으로 차입자에게는 더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

▪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자들의 집단지성 활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IT 기술에 기반한 회사가 운영함에 따라 전통적인 대출취급기관들이 이용하지 않는 빅데이터 및 비정형화된 데이터 등을 이용한 신용심사도 가능

▪ 플랫폼이 정보 중개뿐만 아니라, 실사, 신용정보 확인 및 심사, 대출관리, 추심 등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투자자는 차입자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구조에서 대출부실 리스크는 투자자가 모두 보유하는 구조

목 차

I. P2P 대출 개요

II. 해외 P2P 대출 동향

1. 해외 주요 P2P 대출 규모 및 종류
2. 해외 주요 P2P 대출 부실률 및 투자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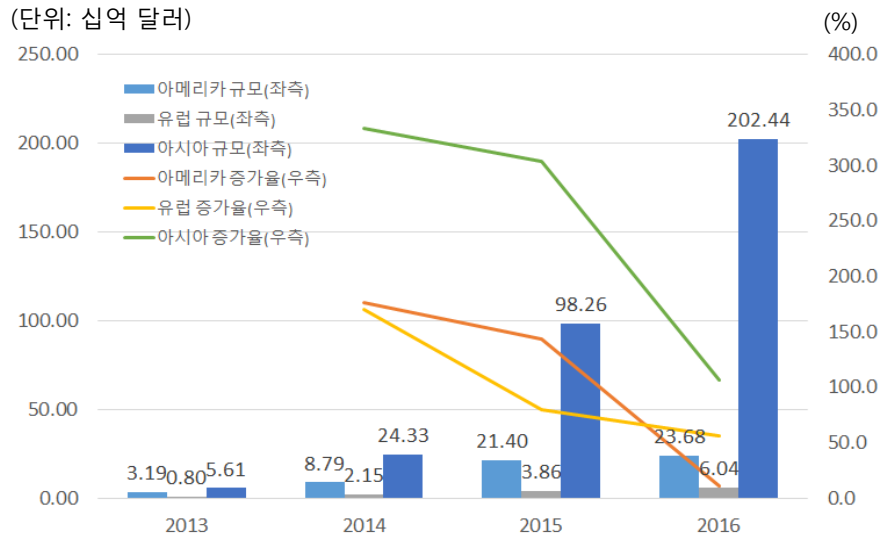
III. 해외 P2P 대출 구조 및 제도

IV. 결론 및 시사점

II. 해외 주요국 P2P 대출 규모 및 종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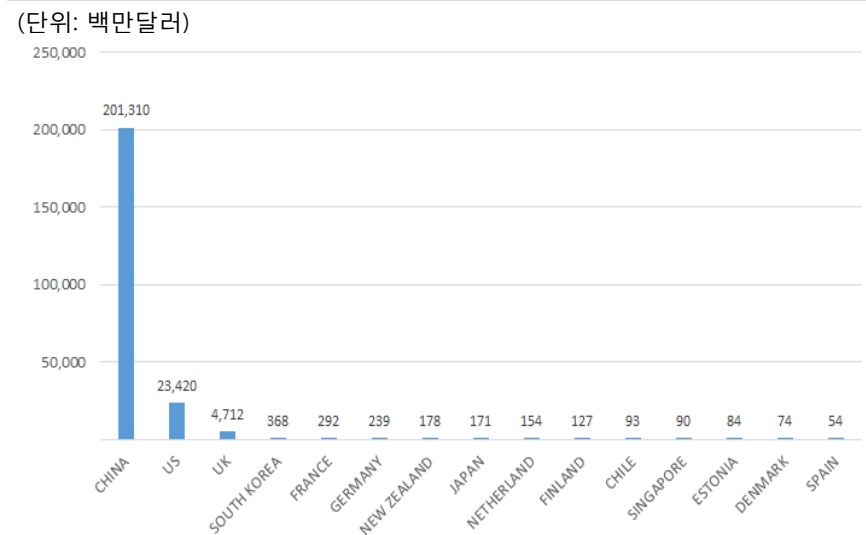
-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태평양(중국포함)의 P2P 대출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2,322억 달러로 2013년 대비 24배정도 확대(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한국 등의 높은 증가세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의 조사대상 전체 Alternative Finance 시장 중 P2P 대출 비중이 2016년 기준 80.3% 정도로 절대다수를 차지(Alternative Finance에는 P2P 대출 외에 증권형 및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온라인자본 투자 및 대출, 온라인어음할인플랫폼 등이 포함)
-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2,000억 달러 규모로 분석 대상 전체 P2P 대출 시장규모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10% (234억 달러), 영국이 2% (47억 달러)를 차지**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P2P 대출 시장 규모 추이



주: 유럽자료는 유료 표시로 조사되었는데 2018년 6월 환율로 환산하여 비교
자료: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국가별 P2P 대출 시장 규모(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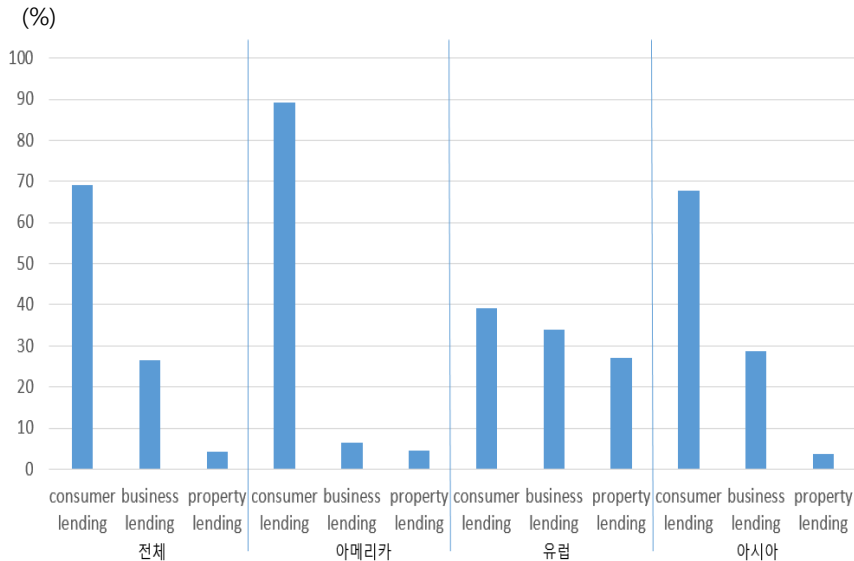


주: 2016년 기준 상위 15개국
자료: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II. 해외 주요국 P2P 대출 규모 및 종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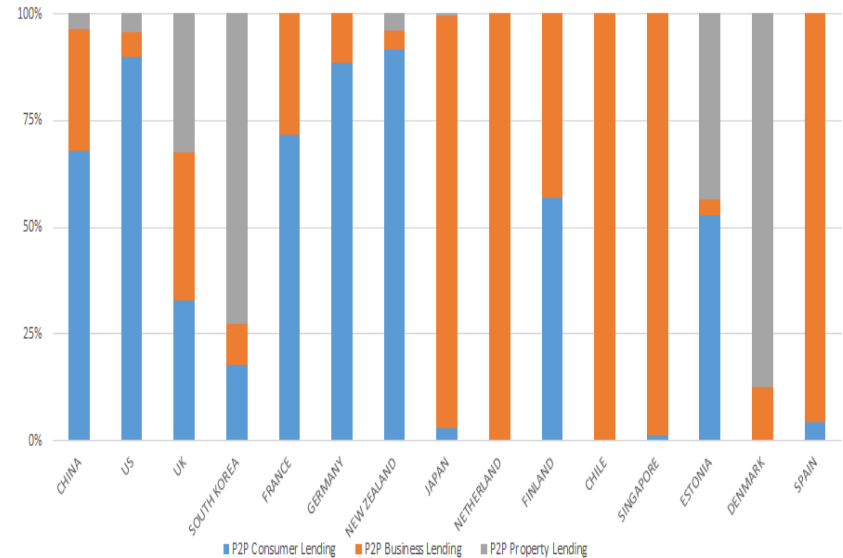
- 전체 P2P 대출 시장 중 Consumer Lending의 비중은 69.1%로 가장 높았으며 Business Lending은 26.6%, Property Lending(Real Estate)은 4.3%를 차지
- 국가별로 P2P 대출 종류별 비중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 (시장규모가 큰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
 - Consumer Lending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92%), 미국(90%) 등
 - Business Lending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칠레 (100%), 네덜란드(100%) 등
 - Property Lending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덴마크(87%), 한국(73%) 등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P2P 대출 종류별 비중(2016년 기준)



자료: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국가별 P2P 대출 종류별 비중(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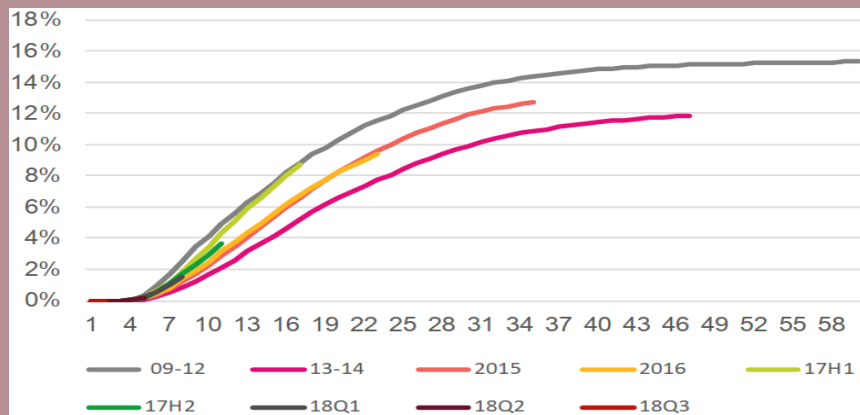
주: 2016년 기준 상위 15개국
자료: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II. 해외 주요 P2P 대출 부실률 및 투자수익률 [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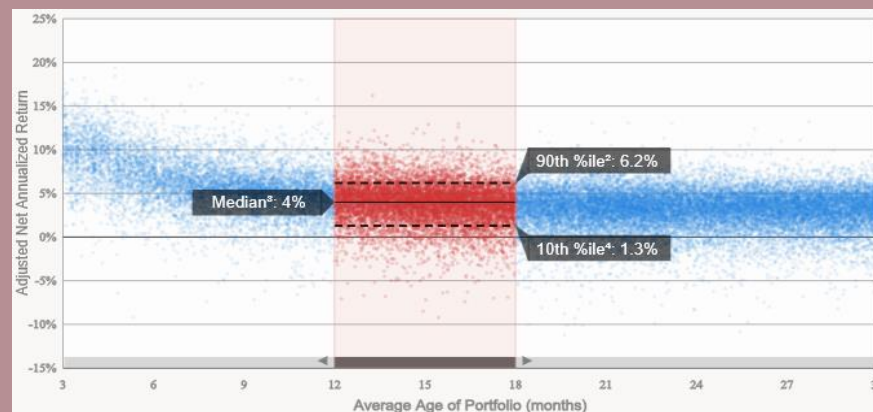
- 대표적인 P2P업체인 Lending club과 Prosper의 자료를 보면 대출시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6~7%의 손실을 목표로 평균 10%를 상회하는 이자율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013~2015년 정도에 나간 대출의 경우 부실률은 10%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상각채권에 대해서 일정 부분 회수하여 6~7%의 손실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추정됨.
 - 1% 정도의 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Lending club의 수익률 중간값은 4% 전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Lending club 대출의 평균만기는 2년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Prosper 대출시기별 누적 부실률



자료: Prosper

Lending Club 평균 100개 증권 포트폴리오 투자시 조정된 투자수익률



자료: Lending Club

II. 해외 주요 P2P 대출 부실률 및 투자수익률 [2]

영국

- 주요 P2P업체의 부실률(loan losses)을 보면 2013~2014년 사이에 회사별로 사업대출은 3~4% 정도, 개인대출은 2~3%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 기간 동안 은행의 경우에는 부실률이 0.1~0.2%였으며, 여신전문회사(Specialist lender)나 저축은행(Savings bank) 등의 NPL은 1~3% 정도였음.
- P2P업체마다 다르지만 기대손실률은 대략 0.1~3.6% 정도,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은 4.0%~10.8% 정도로 기대하고 영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대출의 평균만기 역시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회사의 대출평균만기는 1.5개월에서 78개월까지 다양하게 존재
 - 담보의 유무는 대출영업행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승인율은 평균 10~1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영국 2013~2014년 P2P업체별 실제 및 예상 부실률

	주된 차입자 타입	2013	2014
Funding Circle	사업 대출	4.1%(4.6%)	3.0%(4.4%)
ThinCats	사업 대출	4.1%(4.1%)	3.7%(4.0%)
RateSetter	소비자 대출	1.7%(1.5%)	3.0%(2.2%)
Lending Works	소비자 대출	n.a.(n.a)**	0.6%(1.5%)
Zopa	소비자 대출	0.7%(1.3)	1.5%(2.1%)
MarketInvoice	인보이스 금융	0.2%(n.a.*)	0.5%(n.a.*)
Landbay	부동산 대출(모기지)	n.a.(n.a)**	0.0%(0.1%)
LendInvest	부동산 대출	0.0%(0.0%)	0.1%(0.1%)

주: ()안은 대출 실행 년도 기준 예상 부실률(expected loan losses)
자료: Oxera(2016)

영국 P2P업체별 기대손실률, 기대수익, 평균만기

	전체기간 예상 손실률	연간 기대 수익률	평균 만기(월)
Funding Circle	3.6%	7.1%	46
ThinCats	3.5%	9.0%	33
RateSetter	2.8%	4.8%	26
Lending Works	1.5%	5.6%	42
Zopa	2.9%	4.8%	44
MarketInvoice	2.8%	10.8%	1.5
Landbay	0.1%	4.0%	78
LendInvest	0.1%	7.2%	10

자료: Oxera(2016)

목 차

I. P2P 대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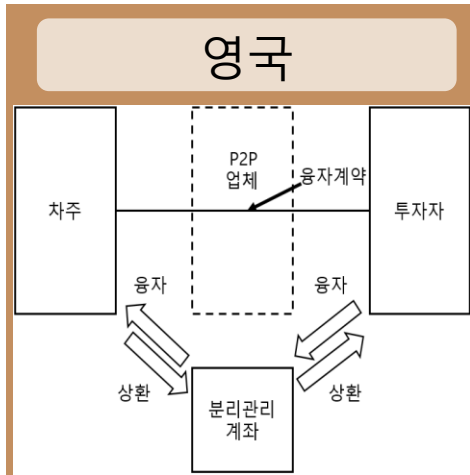
II. 해외 P2P 대출 동향

III. 해외 P2P 대출 구조 및 제도

IV. 결론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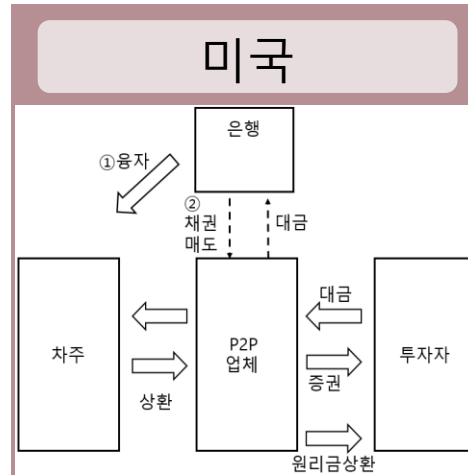
III. 해외 P2P 대출 구조 및 제도 [1]

대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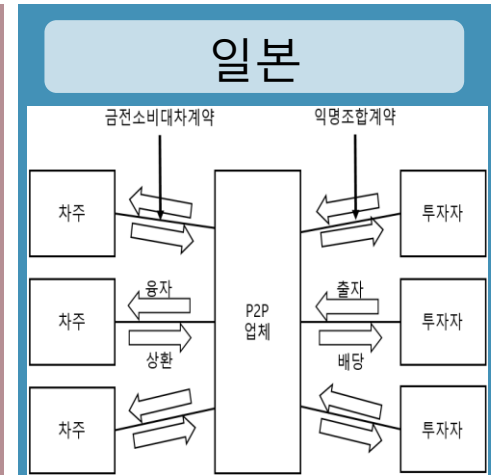
차입자와 투자자 간 직접 계약 방식

- 차입자와 투자자가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
- P2P업체(플랫폼)는 차입자와 투자자간 중개, 상환관리, 권리행사대행, 신용정보 확인 및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



대출채권에 기반한 증권발행 방식

- P2P업체가 차입자와 투자자의 매칭을 주선*한 후, 차입자는 P2P 업체의 파트너 은행(funding bank)을 통해 차입
- P2P업체는 funding bank로부터 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기반으로 증권을 발행



대금업 및 익명조합투자 방식

- P2P업체가 대금업자로서 대출하고, 그 재원은 상법상 익명조합 계약에 근거하여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P2P업체는 영업자로 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출자자는 익명 조합원으로 영업자에게 출자

자료: 左光 敦(2018)

* P2P 업체가 대출모집 및 스크리닝, 대출기간 및 금리설정 등을 하고 투자자들이 해당 대출에 대한 투자를 선택하면 해당조건으로 파트너 은행이 대출을 제공

III. 해외 P2P 대출 구조 및 제도 [2]

법률구성차이에 따른 영업 행태에 대한 규제

P2P업체 (플랫폼) 부실화 위험 및 대응체계

영국

- Regulated Activities Order Article 36H “operating an electronic system in relation to lending”라고 P2P 대출을 정의하고 FCA 인가 하에 영업

- 차입자와 투자자간 계약구조 외에도 P2P 업체 자산과 고객 자금간 분리 관리 의무화 등으로 P2P업체 파산이 차입자나 투자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규제
- 또한 플랫폼 파산 등 업무정지 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잔존대출 관리 등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장치들을 마련하도록 규제

미국

- 별도의 P2P 대출에 대한 라이선스 없이 증권관련 법이 적용*
- 은행(funding bank)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은행의 외부기관(Third party)으로써 관리감독을 받음.

-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영업모델이 발달하여 왔는데, 예를 들면 투자자문업으로 등록 후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를 통해 notes를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P2P업체와 신용위험을 분리

일본

- P2P업체가 대금업 등록을 하고 대출영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2종 금융상품취급업으로 등록하고 익명조합의 영업업무를 수행

- P2P업체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익명조합 계약은 해지되고 출자자는 출자가액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출자자는 P2P업체의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구조
-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미국의 경우 증권투자자로 헤지펀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진입이 확대되면서 개인간 거래를 의미하는 P2P라는 용어 대신 marketplace lending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

III. 해외 P2P 대출 구조 및 제도 [3]

	영국	미국	일본
자본금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금의 경우 5만 파운드를 최소한도로, 대출잔액에 따라 계단형으로 최소자본금이 증액되는 방식으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라이선스가 없으므로 증권법 적용 최소자기자본 규제를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영업이 가능한 수준의 자본금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라이선스가 없으므로 대금업의 자본금 규제와 2종 금융상품취급업의 자본금 규제 중 높은 금액(대금업 5,000만엔)을 적용
투자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사, 신용정보심사, 관리 등의 영업시 주의의무와 고객이익최선의무*를 준수 모든 정보는 공정하고 (fair), 명확하며 (clear), 오해의 소지가 없게 (not misleading)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비즈니스모델,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조 아직 신용싸이클을 완전히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Pricing 설정 방식,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을 판매함에 따라 증권법 (Securities Exchange Act)에 따라 SEC의 승인을 받아서 투자자를 모집 PROSPECTUS에 발행 규모, 수수료, 이자율, 만기 등을 공시 다만 일반 증권 공모 시 승인조건이 면제되는 경우들을 이용하여 규제부담을 덜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한 행위규제로 계약 체결 전 서면 교부 의무가 적용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재산상황의 변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제공

* Principle 2 (PRIN 2.1.1R) "A firm must conduct its business with due skill, care and diligence"와 the client's best interests rule10 (COBS 2.1.1R) "A firm must act honestly, fairly and professionally in accordance with the best interests of its clients"

III. 해외 P2P 대출 구조 및 제도 [4]

차입자 보호	영국	미국	일본
차입대상 또는 차입규모별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신용법 (Consumer Credit Act)에 근거하여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신용심사, 담보제공 시 리스크 설명 및 대출 계약 시 주요 사항 설명, 청약철회권 등이 적용되고 그밖에 홍보, 추심 등의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 • 개인대출의 경우 최근 시행된 상환부담능력평가*를 의무화할 예정 • 투자자가 개인(또는 관련인)이 아닌 경우, 차입자가 개인(또는 관련인)이고 차입금액이 25,000 파운드 이하이거나 차입 목적이 비즈니스가 아닌 경우로 제한(영국 외 유럽 주요국의 경우 연간 프로젝트별 차입 한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취급을 은행이 함에 따라 취급시 차입자에게 제공되는 보호 수준은 일반적인 은행취급 대출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은 P2P업체의 신용심사, 대출조건 등에 대한 관리책임 존재 • 대출채권 매각 이후에는 P2P업체가 공정채권 추심법, 주별 추심관련 규제 등을 준수해야 함. • 증권의 발행액 상한 등은 존재하지 않음. • 한편 공모관련 규제를 면제받는 조건 중 하나로 일정 금액 이하를 발행하는 경우**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업법에 있는 각종 정보제공 및 서면교부 규제, 추심관련 규제, 과잉대부 금지 및 이자, 보증료 상한 등의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함. • 대금업에 등록하고 영업을 함에 따라 차입대상이나 상한에 대한 규제 등은 존재하지 않음.

* 자금제공자 입장에서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차입자들이 과도한 부채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고 상환액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평가

** Regulation A: 12개월동안 5백만 달러 한도
Regulation A+: 12개월동안 5천만 달러 한도
(다만 금액에 따라 SEC등록요구사항이나 판매 제한사항 등이 존재)

III. 해외 P2P 대출 구조 및 제도 [5]

투자자 제한
또는
투자한도
규제

영국

- 현재까지는 플랫폼의 권유행위를 FCA의 규제 대상 행위로 포함하여 고객이익 최선의 의무에 따라 권유하되 구체적인 제한은 없었음.
- 그런데 작년 P2P 대출 업체 실태점검 이후 관련 규제 신설을 제안*

미국

- 적격 투자자 조건에 따라 투자자를 제한하거나 투자한도를 제한
- Lending Club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연간 소득/순자산의 적합성 기준을 부여

일본

- 특별한 투자자 제한이나 투자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영국의 투자자에
대한 판촉제한(안)

- * 판촉(promotion)시 공인된 자문업자나 투자관리서비스로 연결된 투자자, 해당 지식이 뛰어나 위험감수 능력이 있다고 인증된 투자자(certified or self-certify as sophisticated investors), 고소득층 투자자(high net worth investors) 또는 순투자자산(net investible portfolio)의 10% 이내로 P2P에 투자하는 투자자로 판촉대상을 제한
 - * 만약 자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여 투자 전에 해당 경험 및 지식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판촉하도록 의무화
- <참고>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 프로젝트별 및 연간 투자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EU 규제방안(안)에는 knowledge test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미국 Lending
Club 적격투자자

- * Lending Club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주에서 연간 소득/순자산의 적합성 기준을 부여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주들은 (i)연간 총소득 70,000달러와 순자산(주택 및 주택관련 용품, 자동차 제외) 70,000달러 이상이거나, (ii)순자산(주택 및 주택관련 용품, 자동차 제외) 250,000달러 이상인 투자자로 제한
- *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i)연간 총소득 85,000달러와 순자산(주택 및 주택관련 용품, 자동차 제외) 85,000달러 이상이거나, (ii)순자산(주택 및 주택관련 용품, 자동차 제외) 200,000달러 이상인 투자자이거나 투자금액이 2,500달러를 넘지 않는 투자자로 제한
- * 모든 투자자는 투자자의 순자산가치(주택 및 주택관련 용품, 자동차 제외)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

III. 해외 P2P 대출 구조 및 제도 [6]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

- 자동배분투자, 대출풀링 및 유동화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진 않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관련 규제 등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경향
 - 기본적으로 P2P는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것인데 이러한 집단지성이 작동하기 어려운 자동배분투자, 대출채권 풀링 및 유동화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됨.
 - 미국, 영국 등은 자동배분투자를 자문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채권을 풀링하거나 유동화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유동화 관련 규제가 엄격히 적용
- 부실준비기금(provision fund)의 경우 영국에서 특히 활발한데, FCA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우려가 존재함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규제를 강화
 - provision fund를 운용할 경우 신용위험을 풀링(pooling of credit risk)함으로써 P2P업체가 점점 은행 또는 자산운용(asset management)과 유사하게 되지만 자본적정성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차익이 발생할 우려 존재
 - provision fund가 금융소비자들에게 예금자보호처럼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금소유권 등의 문제도 존재
- 자기자본(Balance sheet) 투자의 경우 관련 라이선스가 특별히 없는 미국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나 대형 P2P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소극적이며, 정의상 중개기능을 강조하는 영국은 P2P 대출업체의 Balance sheet 투자를 가능한 지양
 - 미국 Lending Club의 경우 불가피하게 대출채권의 일부를 자기자본으로 보유하긴 하나, 이를 선호하진 않으며 이러한 보유가 투자자들의 증권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업체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FCA가 비즈니스 모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의 자기자본 투자 영업 모델을 수정하였으며, 일부 영업모델에 한해서만 P2P업체로 하여금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자기자본 투자를 하되, 모든 대출에 동일하게 후순위로 들어가게 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

<참고자료> 최근 중국 P2P 대출 규제강화 동향 [1]

P2P 대출시장 성장

- 중국의 P2P 대출 시장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느슨한 규제 하에서 매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토대로 성장하였는데 특히 대출원리금에 대한 보증방식이 활성화되며 시장이 급성장
 - 기존의 금융서비스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P2P가 새로운 자산운용수단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지역의 소규모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설립되어 성장하기도 함.
 - 또한 온라인에만 국한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대출이나 투자도 겸하여 영업하는 경우도 존재
 - 특히 중국의 P2P 대출 시장의 영업형태가 초기에는 단순히 매칭모델을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2012년 이래로 플랫폼에서 대출원리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 활성화

소비자 피해 및 당국의 규제 강화

- 2015년 이후 폰지금융식 사기, 횡령 등이 현실화되면서 투자자 등의 피해가 급증
 - 유령회사에 대한 대출 부실화, 단기운영자금이 급박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고금리대출판매에 따른 차입자 부실 등과 함께 P2P업체 파산 증가
- 2016.8월 중국은행감독위원회는 산업정보부,公安부, 국가인터넷정보국 등과 합동으로 P2P 대출 중개기관의 영업 관리에 대한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규제감독을 강화
 - P2P 대출을 금융기관을 제외한 개인 또는 법인 간의 “민간 대출” 금융약정으로 규정하고 플랫폼은 온라인 대출 중개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금융 정보 중개 기관이라고 규정
 - 특히 대출에 대한 보증을 금지하고, 차입한도를 제한하는 한편, 차입자에 대한 실사의무,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을 강화함과 동시에 모든 거래정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2018년 4월부터 record filing system 도입)

<참고자료> 최근 중국 P2P 대출 규제강화 동향 [2]

주요 규제 내용

<투자자 보호>

-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증을 제공하거나 원리금상환을 보장하는 행위 금지
- 투자자자산을 임의로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자금의 분리관리를 의무화
- 차입자 및 프로젝트의 진위성 및 합법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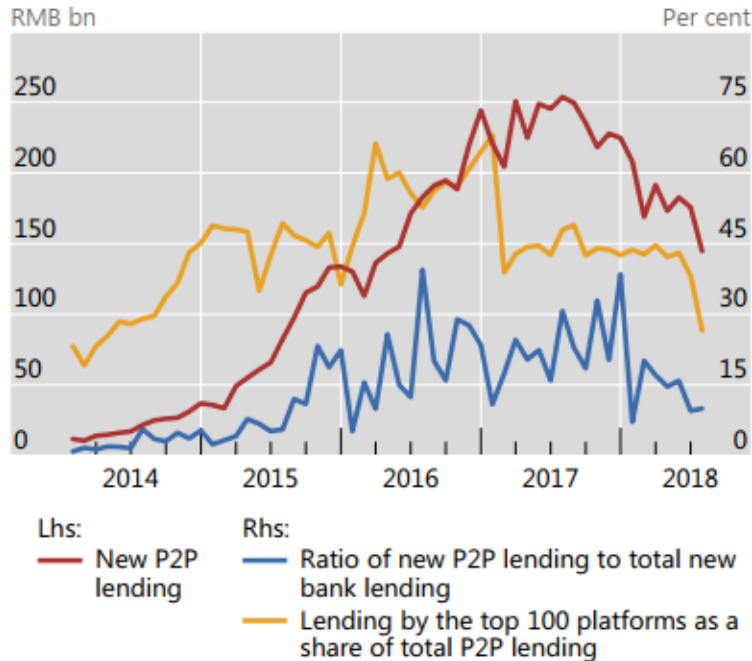
<차입한도>

- (개인) 단일 플랫폼 차입 한도 2십만 위안, 모든 플랫폼 차입 한도 1백만 위안으로 제한
- (법인) 단일 플랫폼 차입 한도 1백만 위안, 모든 플랫폼 차입 한도 5백만 위안으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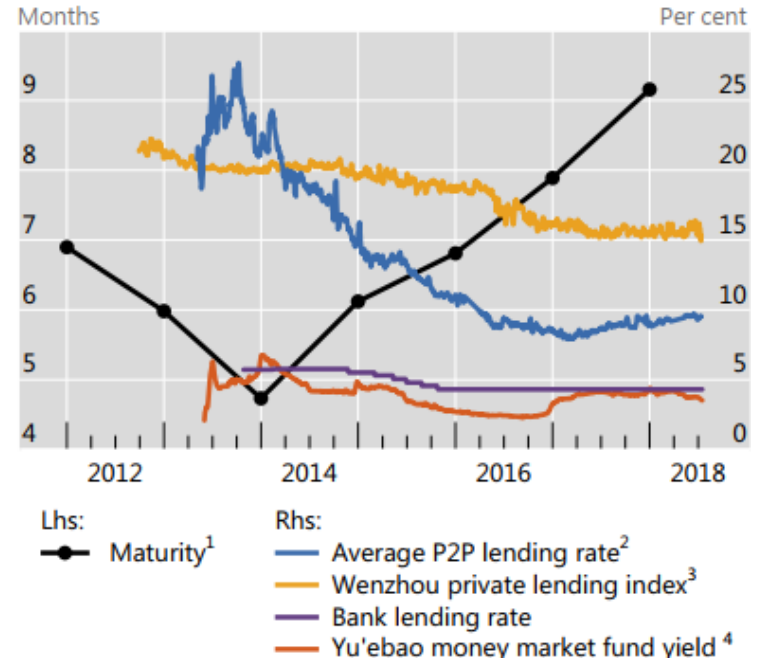
<차입자 보호>

- 상품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이자, 수수료 등)이 포괄된 금액을 명시하도록 의무화
- 이 포괄금액이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안 되며, 2회 이상 대출하지 못하게 제한
-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금지

중국 P2P 대출 시장 규모 추이



중국 대출금리 비교 및 P2P 대출 만기



주:1 Average maturity of P2P lending. 2 Seven-day moving average of one-year rate. 3 The Wenzhou Index, released by the Wenzhou Municipal Government Finance Office, tracks private lending. 4 Seven-day rate on Yu'ebao money market fund.

자료: BIS(2018)

목 차

I. P2P 대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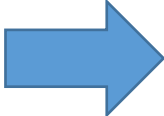
II. 해외 P2P 대출 동향

III. 해외 P2P 대출 구조 및 제도

IV. 결론 및 시사점

IV. 결론 및 시사점 [1]

- P2P 금융이 영국,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주요국 제도를 보면 각국의 상황에 맞게 법률적 체계를 구성하고 규제
 - 다만 주요국 P2P 금융 영업은 모두 금융법의 적용을 받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과 규제하에 있으며, 차주와 투자자간 계약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대출관리, 권리행사 등은 P2P업체가 담당하는 구조로 영업
 - P2P업체의 신용리스크를 이용자와 절연시킨 가운데 진입 및 건전성 규제는 높지 않게 설정하되, 차입자 및 투자자 보호에 규제를 집중
 - 전통적인 대출취급기관에서는 건전성 규제에 커버되는 리스크도 P2P 영업에서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구조
 - 일반적인 금융업권의 보호수준에 P2P 영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장치가 추가
 - 한편 차입자 또는 투자자 대상이나 한도제한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대출이 제공되도록 유인함과 동시에 적합성 원칙이 적용이 어려운 투자자를 보호하고, 규제차익도 배제
 - 영국은 P2P 대출이 개인투자자와 개인차입자간 거래에 집중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은 차입규모가 적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절차를 간결화하거나 면제하는 한편 투자자나 투자한도 등을 제한
- 최근 중국은 P2P 대출관련 사기, 횡령 등이 문제되었고, 미국에서는 Lending club 스캔들이 있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작년 FCA 테마 검사에서 영업모델,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지적 →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며 규제가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되는 경향

- 
- 우리나라는 유사한 상황이나 법적 체계가 미비함을 감안할 때 P2P 금융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을 유인할 필요
 - 우리나라도 현재 P2P 금융이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사기, 횡령이나 파산 등의 문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작년 금융감독원 실태평가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
 - 이용자들은 대출, 투자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인지하나 법적 체계 미비로 일반적인 금융업권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도 받기 어려운 상황

IV. 결론 및 시사점 [2]

-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투자대상뿐만 아니라 영업모델, P2P업체의 역할 등 P2P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이 영업모델이나 정보제공, 영업방식 등에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 신용정보조회 및 심사, 대출조건 및 금리 설정, 대출관리, 추심 등을 모두 P2P업체가 수행함에 따라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리스크는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구조임에 유의할 필요
 - P2P업체는 취급대출규모 확대만이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에 따라 이용자 이익보다 규모 확대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유의할 필요
 - 자동배분투자, 자기자본투자, 손실보전펀드 등 투자유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보조적인 영업수단의 허용 여부 및 허용 수준은 투자자 이익의 최선을 위한 행위로 국한하여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결정할 필요
 - 새로운 영업모델(신용조회 및 심사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가격(이자율, 수수료 등) 설정 등의 공정성이나 경쟁성, 실사 및 리스크관리의 체계 및 책임수준 등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임을 감안할 때 감독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별기업의 상황을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정보제공의 방식의 경우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 필요
- 차입자가 과도한 부채 및 금융비용부담, 과도한 담보, 과도한 추심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
 -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미시적인 건전성 규제 강화, 금리산정체계 등을 금융회사에게 적용하여 가계 및 부동산 등에 대한 대출규모를 조절하고 가계의 건전성과 금융비용부담을 관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P2P 대출이 규제의 풍선효과 또는 규제회피 채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감사합니다